CHAPTER 01

수사

SECTION 01 총설

1-1 총설

01. 검사 을이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사인 검사 갑이 을에게 내사중지 및 종결처리를 명령하였다면, ~~갑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 **갑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02.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경사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사는 사법경찰리에 해당한다.**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0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

→ **회피해야 한다.**

0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 **긴급체포**

05.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에 적용된다.**

0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조사의 일시 ·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과**

07.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으로**

0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시간을**

09.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90일**

10.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

12.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1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 **자정 이전까지**

14.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5.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는 고발인이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16.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있다.**

17.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 **물적 증거를**

1-2 함정수사

01.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

02.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해당하지 않는다.**

03.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이다~~.

→ **공소제기가 아니다.**

05.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공소기각판결을**

06.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 **없다.**

07.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 **공소기각판결을**

0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허용된다.

09.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죄판결을

10.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

1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

12.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위법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해당한다.

1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도 신분위장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 허용된다.

SECTION 02 수사의 개시

2-1 불심검문

01.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할 수 없다.**

02.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 **한다.**

03.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

04.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 **요한다고 할 수 없다.**

05.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한다.**

06.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07.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앞서 당해인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없다.**